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민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2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 박민규 · 이정헌 · 조인철

김우영 • 윤준병 • 김한규

강준현 • 안도걸 • 이학영

윤종군 • 민병덕 • 정동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알고리즘이 금융, 의료, 채용,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.

그런데 알고리즘이 특정한 편향을 내포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,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생명, 안전, 기본권,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안정성·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·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

으로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(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6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"알고리즘"이란 어떤 문제의 해결, 의사결정 및 그 지원, 업무의 수행 또는 장비·장치·기기 등의 운용을 위하여 기술(記述)된 연산, 규칙과 절차, 명령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말한다.

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1조의2(알고리즘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)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알고리즘을 설계·운용할 때 안전성·신뢰성 및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알고리즘의 안정성·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·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<u>4</u> 의2. "알고리즘"이란 어떤 문
	제의 해결, 의사결정 및 그
	지원, 업무의 수행 또는 장비
	·장치·기기 등의 운용을 위
	하여 기술(記述)된 연산, 규칙
	과 절차, 명령 또는 논리의
	집합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말
	<u>한다.</u>
5. ~ 16. (생 략)	5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61조의2(알고리즘 설계 가이드
	라인 마련) ① 지능정보기술을
	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
	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
	알고리즘을 설계·운용할 때
	<u>안전성·신뢰성 및 공공성 향</u>
	<u>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
	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	알고리즘의 안정성·신뢰성 및
	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
	<u> 즘 설계·운용과 관련하여 지</u>

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 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 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.